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020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우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2. 접수 제109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은 D에게 같은 등기국 2020. 2. 20. 접수 제41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85,628,767원을 변제기 2018. 5. 30.,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이 2018. 9. 1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중 6,615,702원은 이자 및 지연이자금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3,384,298원은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결과 2018. 9. 18. 기준 잔여원금 82,244,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채무가 남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D과 그의 처인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4. 30. F, G으로부터 2012.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2. 3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2016. 12.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18. 8. 31. H으로부터 2018. 8. 3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20. 2. 1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D으로부터 2020. 2. 1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20. 접수 제41727호로 9번D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2020. 5. 12. 피고 B의 부(父)인피고 C에게 2020. 5. 12.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국 2020. 5. 12. 접수 제4572호로 20번B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2. 접수 제4572호로 마친 20번B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D에게 같은 등기국 2020. 2. 20. 접수 제41727호로 마친 9번D지분전부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는 피고 C이 매수자금 전부를 매도인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명의만을 D과 B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채무자 D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D이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D은 E의 연대보증인인데 E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D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의 수익자, 전득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준

[별 지 1]

목 록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750.26㎡

2층 742.42㎡

3층 726.82㎡

4층 726.82㎡

5층 726.82㎡

6층 726.82㎡

7층 726.82㎡

8층 726.82㎡

9층 726.82㎡

10층 726.82㎡

11층 726.82㎡

12층 726.82㎡

지하실 632.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946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95.0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4634.5분의 85.85

끝.

